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406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13.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3,792,030원 및 지방교육세 379,2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3. 11. 5.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연제구 C아파트 104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01,13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15. 잔금지급을 완료하고, 2013. 11. 22.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3. 11. 14. 혼인신고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주택에 2013. 11. 19. 원고 A을 세대주로, 2013. 11. 20. 원고 B을 세대주의 배우자로 하는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3. 11. 21. 피고에게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 당시 이미 기혼자로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부인하고, 2014. 10. 10. 원고들에게 취득세 3,792,030원, 지방교육세 379,2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는 혼인 후 세대를 분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만드는 경우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가목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를 해석함에 있어서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혼인에 따른 세대 분가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과 세대 분가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주택 취득일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로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의 문언적 의미나 구조, 입법취지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조항 중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가를 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로 등록하되, 그 분가가 혼인에 따른 것일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① 구 지방세특례법 제36조의2는 생애최초로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제정되었다.

② 이 사건 조항이 '혼인에 따른'을 취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세대원이던 사람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로 분가'만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실수요자가 아님에도 단순히 세대만을 달리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분가가 '혼인에 따른 것'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입법취지에 맞추어 실수요자에게 취득세 면제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을 할 것을 취득세 면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지 않고, 이러한 해석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③ 또한 일반적으로 혼인일(결혼식날)은 혼인으로부터 수개월 전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는 혼인일과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혼인신고일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점, 부동산 취득의 기준이 되는 잔금지급일은 취득자(매수인)와 매도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취득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결정된 기일도 취득자의 잔금 마련, 매도인의 이사 갈 주택 마련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을 피고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우연한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일자와 혼인신고일자의 선후에 따라 취득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취득일인 2013. 11. 15.로부터 60일 이내인 2013. 11. 19. 및 2013. 11. 20. 주민등록표상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되었고, 그 분가가 혼인에 따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영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판사 신수빈

판사 신동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0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끝>